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기획재정위원회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12661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 지 은

목 차

I . 개요	1
--------------	---

II . 주요 내용별 검토	5
----------------------	---

1.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의 연대납세의무 강화(정부안)	5
2. 품목분류 사전심사 장기화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 감면(정부안)	11
3. 세율불균형물품 제조·수리공장 지정기간 연장(김영진의원안, 정부안)	18
4. 관세 중복조사 금지 대상 명확화 및 사전통지기간 합리화 (정부안)	22
5. 보세공장 생산제품의 혼용비율·원료 과세 신청기한 조정(정부안)	28
6. 보세운송 시 운송수단 관련 의무 명확화(정부안)	32
7. 소액화물 상표권 보호 간이 절차 신설(정부안)	35
8. 탁송품 실제 배송지 제출 대상 및 주체 확대(정부안)	41
9. 불법·불량·유해물품 관련 정보제공 요청 범위 확대(차규근의원안, 정부안)	49
10. 마약류·유해물품 등 은닉 의심자에 대한 신체 검색 근거 명확화 (김영진의원안, 정부안)	54

I. 개요

1. 정부안(의안번호 제12661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정부
- (2) 제 안 일 : 2025. 9. 3.
- (3) 회 부 일 : 2025. 9. 4.

나. 제안이유

관세 탈루를 방지하기 위하여 구매대행업자의 연대납세의무 요건을 강화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결과 적용에 따른 납세자의 가산세 감면 사유를 신설하며,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세조사의 사전통지 기간을 합리화하는 한편,

상표권 침해 물품에 대한 단속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소액의 탁송품 등의 상표권 보호 절차를 간소화하고, 탁송품 운송업자의 실제 배송지 제출 의무를 합리화하며, 마약류 등의 반입 단속을 강화하기 위하여 마약류 등을 숨기고 있다고 의심되는 자에 대한 신체 검색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가. 구매대행업자의 연대납세의무 요건 강화(안 제19조제5항제1호다목)

종전에는 구매대행업자가 화주로부터 수입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관세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령한 경우로서 수입신고인에게 과세가격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에만 화주와의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였으나, 앞으로는 수입신고인에게 과세가격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함.

나.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결과 적용에 따른 납세자의 가산세 감면 사유 신설(안 제42조의2제1항제7호 신설)

품목분류의 사전심사를 신청한 납세자가 사전심사 신청일부터 그 심사결과 통지일 전일까지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사전심사 결과로 통지된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사전심사 결과 통지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액에서 감면하도록 함.

다. 관세조사의 사전통지 기간 합리화(제1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세관공무원이 관세조사를 하는 경우 종전에는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 대상, 조사 사유 등을 사전통지 하였으나 앞으로는 20일 전에 사전통지 하도록 하되, 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에 따라 재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7일 전에 사전통지를 하도록 함.

라. 소액의 탁송품 등의 상표권 보호 절차 간소화(안 제235조의2 신

설)

세관장은 탁송품 또는 우편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가격 이하의 물품이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 제공, 통관의 보류·허용 및 유치·유치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마. 탁송품 운송업자의 실제 배송지 제출 의무 합리화(제254조의2제3항 단서 신설)

탁송품 운송업자가 다른 자로 하여금 통관목록 또는 수입신고서에 적힌 물품수신인의 주소지가 아닌 곳에 탁송품을 배송하게 한 경우에 종전에는 탁송품 운송업자가 실제 배송한 주소지를 직접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탁송품 운송업자가 실제 배송한 자로 하여금 실제 배송한 주소지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바. 마약류 등의 은닉이 의심되는 자에 대한 신체 검색 근거 마련(안 제265조제2항·제3항 신설)

세관공무원은 마약류 등 유해물품에 대한 검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여행자 등의 휴대품 및 휴대품 소지 여부를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색장비를 사용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검색 결과 여행자 등이 마약류 등을 휴대하거나 숨기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내보이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체 검색을 할 수 있도록 함.

라.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6년도 세입 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나.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65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의 연대납세의무 강화(정부안)

현 행	개정안
☐ 연대납세의무자(§19⑤) ○ 연대납세의무자 - 수입신고물품이 공유물이거나 공동사업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 :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인 납세의무자 - 수입신고인이 수입신고를 하면서 ① 화주가 아닌 자를 납세의무자로 신고 ② 수입신고인 또는 납세의무자가 관세포탈등의 죄로 유죄 확정판결 : 수입신고인 및 납세의무자로 신고된자와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 - 구매대행업자가 * ① 화주로부터 수입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관세 등에 상당하는 금액 수령 ② 수입신고인 등에게 과세가격 등의 정보 거짓 제공 : 구매대행업자와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 * 자가사용물품을 수입하려는 구매자의 위임에 따라 해외판매자로부터 해당 물품의 구매를 대행하는 자	☐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의 연대납세의무 요건 강화 ○ (현행과 같음) - 구매대행업자 ① (현행과 같음) ② <삭 제> ○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경우 구매대행업자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름

* 정부안 2025. 9. 3. 제출(의안번호 12661)

☐ 개정안은 연대납세의무자 중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의 연대납세의무를 강화하여 관세 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연대납세의무의 성립

요건을 일부 축소하려는 것임.

□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조세를 납부할 법률상 의무를 지는 자로서,

「관세법」은 원칙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화주¹⁾에 대해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또한, 수입물품에 관계되는 관세·가산세 및 강제징수비에 대하여 특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법률상 규정된 자가 연대하여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²⁾

이 중 구매대행업자에 대해 ① 화주로부터 수입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관세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령하고 ② 수입신고인 등에게 과세과격 등의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이하 ‘과세가격 거짓 제공 요건’) 구매대행업자와 수입신고하는 화주가 연대하여 관세·가산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의무³⁾를 부과하고 있음.⁴⁾

1) 「관세법」

제19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화주가 불분명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다만,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또는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이 부족한 경우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인이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와 연대하여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가.~다. 생략

2.~12. 생략

2) 「관세법」

제19조 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물품에 관계되는 관세·가산세 및 강제징수비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3) 1. 제1항제1호에 따른 수입신고물품의 경우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자

가.~나.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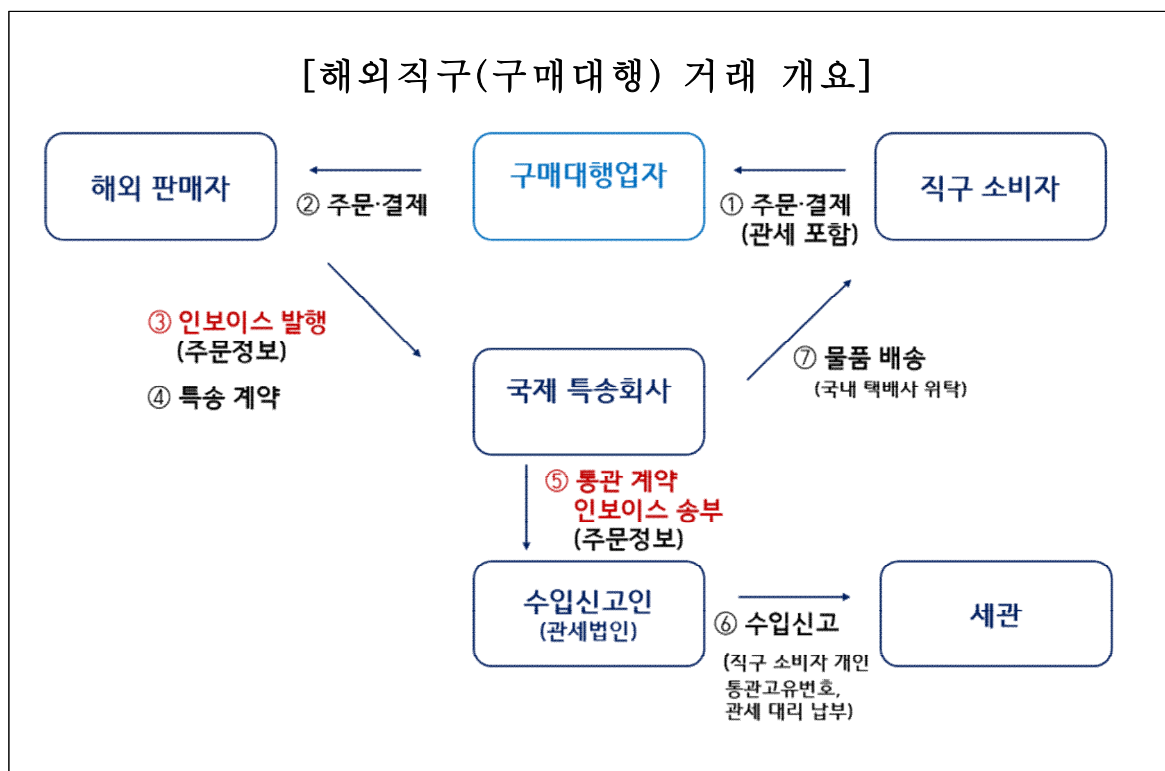
다.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구매대행업자”라 한다)가 화주로부터 수입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관세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령하고, 수입신고인 등에게 과세가격 등의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 구매대행업자와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

- 1) 자가사용물품을 수입하려는 화주의 위임에 따라 해외 판매자로부터 해당 수입물품의 구매를 대행하는 것
- 2) 사이버몰 등을 통하여 해외로부터 구매 가능한 물품의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을 자가사용물품으로 수입하려는 화주의 요청에 따라 그 물품을 구매해서 판매하는 것

- 4) 관세를 선납받은 구매대행업자가 물품 가격을 저가로 신고하여 세금을 편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19년도에 도입된 제도임. 구매대행업자 중 일부는 총액(판매금액)을 제시하면서 해당 금액에 관세, 부가세 등이 포함되었음을 안내하고 수입신고인(관세사)이 소비자 개인통관고유번호로 관세를 신고 납부하는 등 통관을 진행함.

그러나, 일부 구매대행업자들이 ‘과세가격 거짓 제공 요건’을 회피하면서 관세를 포탈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⁵⁾ 이 경우 직구 소비자(화주)는 구매대행업자에게 이미 관세 등을 선납했음에도 불구하고 구매대행업자에 의해 물품이 저가 신고됨에 따라 부족세액을 추가 징수하게 됨.

- 이에 개정안은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하는 요건 중 하나인 ‘과세 가격 거짓 제공 요건’을 삭제하여 화주로부터 납부할 관세 상당액을 수령한 사실만으로도 구매대행업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으로, 일부 구매대행업자의 세금 편취 행위로부터 직구소비를 보호하려는 것임.



자료: 기획재정부

5) 일부 구매대행업자가 가격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해외판매자와 공모하여 저가 신고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현행법은 직구 소비자가 지급한 실제 거래가격⁶⁾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이 결정되나, 일부 구매대행업자들이 해외판매자와 결탁하여 해당 물품에 대해 저가신고 후 소비자에게 가격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해외판매자가 송품장을 직접 수입신고인에게 전달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이 경우 구매대행업자가 수입신고인에게 과세가격을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연대납세의무요건 중 행위요건인 ‘과세가격 거짓 제공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구매대행업자는 납세의무를 지지 않고, 실제 거래가격 대비 부족한 관세액은 화주만이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부조리가 발생하였음.

- 이에 개정안과 같이 구매대행업자의 연대납세의무 요건으로서 ‘과세가격 거짓 제공 요건’을 삭제하는 경우, 부정한 방식으로 세금편취행위를 하는 구매대행업자들이 과세가격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함으로써 ①저가허위신고로 관세 등의 탈루 행위를 억제하는 한편, ②부당하게 화주가 관세 부족분에 대한 추정 대상이 되는 사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해당 개정은 관세 등 세액을 성실하게 신고·납부하고 있는 다수의 구매대행업자는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으며, 구매대행업자가 소비자가 관세를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수입신고인과 소비자를 직접

6)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연결하는 방법 또한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⁷⁾

[전자상거래 저가신고 적발건수]

		2023	2024	2025.04
건수 (단위:건)		38,542	53,272	22,827
금액	저가 신고금액	287만불	339만불	152만불
	미납관세액	39.4억원	46.6억원	20.9억원

주1: 2024년 전체 전자상거래 수입신고(목록통관 제외) 건수: 4,127만건, 총 금액 3조 5,110억원
자료: 기획재정부

한편, 개정안에 대해 관세학회, 관세사회 등 관련 전문가 집단 또한 구매대행업자의 연대납세의무 강화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참고로 「국세기본법」 등 기타 내국세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규정의 경우에도 또한 일반적으로 행위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내국세의 연대납세의무 성립 요건]

세법	연대 납세의무 발생원인	연대납세의무자
국세기본법	❶ 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	공유자, 공동사업자
	❷ 분할되거나 분할합병 후 분할법인 존속 시 분할등기일 이전에 성립한 분할법인에 대한 국세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 분할합병 상대방 법인
	❸ 분할되거나 분할합병 후 소멸시 분할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국세	분할신설법인, 분할합병 상대방법인
	❹ 회생법§215에 따라 신회사 설립 시 회생중 법인에게 부과된 국세	신회사
법인세법	❺ 둘 이상의 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경우의 법인세	각 연결법인
상증법	❻ 둘 이상의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공동상속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상속인 또는 수유자
	❼ 수증자 주소 등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의 증여세	증여자

7) 그림 내 ①단계에서 소비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의 납부를 소비자가 직접신고·납부하도록 구매대행업자가 소비자에게 수입신고인을 연결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158

2. 품목분류 사전심사 장기화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 감면(정부안)

현 행	개정안
☐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사유 (§42의 2①) ○ 감면사유 - ACVA * 결과 통보 후 2개월 내 수정 신고 등 * 특수관계자 간 거래 물품에 대한 과세 가격 사전심사 제도 - <신 설>	☐ 감면사유 확대 ○ (현행과 같음) -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를 통지받고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한 세액을 수정신고 한 경우 : 부족 세액의 100분의 10 ○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사전심사 결과의 통지를 받아 이 법 시행 이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도 적용

* 정부안 2025. 9. 3. 제출(의안번호 12661)

☐ 개정안은 신고불성실가산세 감면 사유에 품목분류 사전심사결과를 통보받고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한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현행 「관세법」은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관세액을 징수하거나 부족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⁸⁾ 이는 미납부세액이나 부족세액에 대해 가산세를 추가적으

8) 「관세법」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이 조에서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하거나 제38조의3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부족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1.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2.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로 징수하여 국가의 과세권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취지임.

[가산세의 구조]

가산세 = 신고불성실가산세(A) + 납부지연가산세(B)

※ 신고불성실가산세(A)는 과소신고 등 신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자를 제재하기 위한 성격의 것이고, 납부지연가산세(B)는 납부기한이 지나 관세를 납부함에 따른 부당이득을 회수하기 위한 성격이 있음.

이와 더불어 현행법은 가산세에 대한 감면사유를 열거하며, 요건별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전부 또는 일부 감면하고 있음.

[가산세 감면 사유(§42의2)]

	가산세 감면 사유	감면 가산세
1호	수입신고 수리 전 관세를 납부한 결과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로 수입신고 수리 전에 납세의무자가 수정신고를 하거나 세관장이 경정하는 경우	신고불성실, 납부지연
2호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납세의무자 제출자료가 사실과 다르기 판명되어 추징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	신고불성실, 납부지연
3호	특수관계자 간 거래되는 물품의 과세가격 사전심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후 2개월 이내 통보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따라 당초 신고내용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신고불성실
4호	수입신고 수리전 세액심사대상 물품 중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	신고불성실
5호	다음 기간 내 수정신고를 한 경우 ① 보정기간(신고납부일로부터 6개월까지)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	① 신고불성실 가 산 세 액 의 30%

가. 미납부세액 또는 부족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나.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 100분의 3(관세를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부정한 행위(납세자가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말한다)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과 제1항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가산세 감면 사유	감면 가산세
	②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초과~ 1년 이내 ③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다만, 세관장이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경우 등은 제외	② 신고불성실 가 산 세 액 의 20% ③ 신고불성실 가 산 세 액 의 10%
6호	가산금 면제 대상인 국가·지자체가 직접 수입하거나 기증받은 물품, 우편물의 경우	신고불성실, 납부지연
7호	관세심사위원회가 30일 이내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결정·통지 지연기간에 부과되는 납부지연 가 산 세 액 의 50%
8호	납세의무자에게 다음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① 천재지변등으로 인한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관세법 해석 질의·회신 등에 따라 신고·납부했으나 이후 동일 사안에 대해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③ 그 밖에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고불성실, 납부지연

개정안은 이러한 가산세 감면사유에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를 통지받고 통지된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통지일로부터 2개월 내 수정 신고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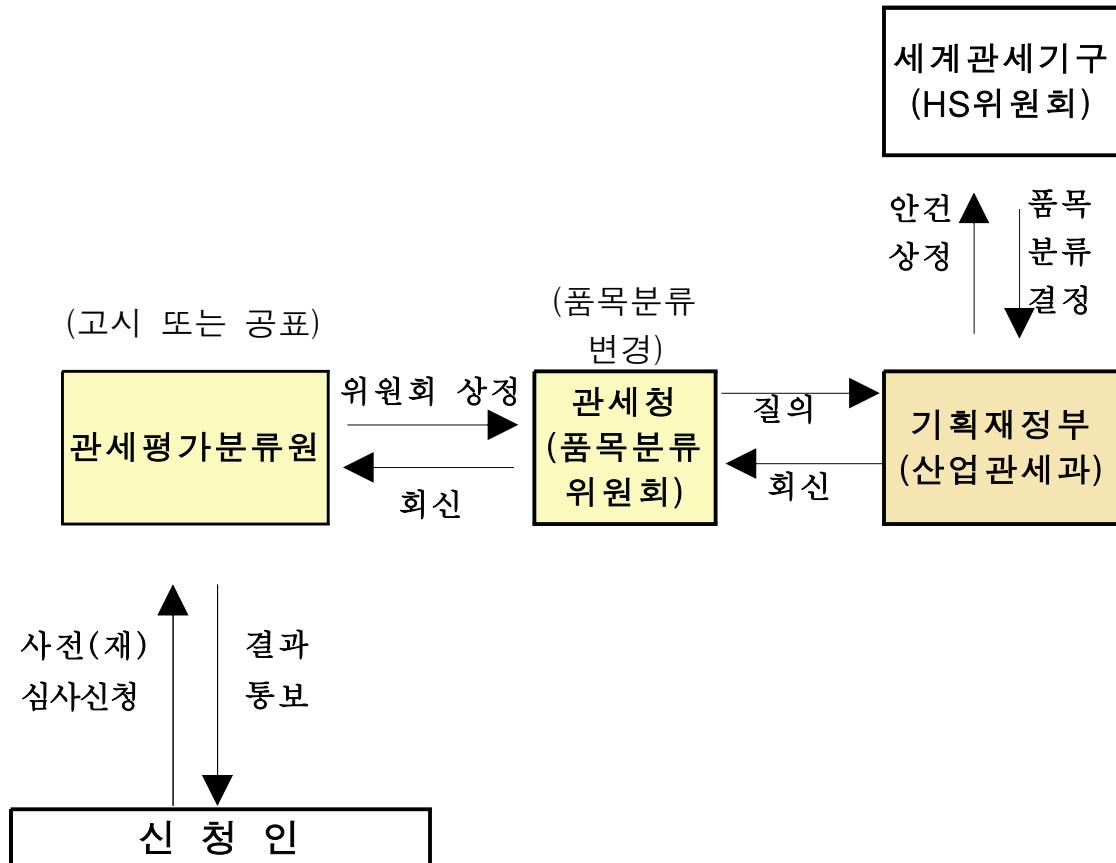
□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첫째, 품목분류 사전심사 장기화에 따르는 가산세 납부의 불합리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현행법은 수출입상품을 분류하여 관세 및 내국소비세를 부과하는 등 정책적 필요에 따라 이를 활용하기 위해 수출입상품의 품목분류제⁹⁾를 시행하고 있으며,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수출입신고

를 하기 전에 해당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이하 ‘품목
분류 사전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¹⁰⁾

[품목분류 사전심사·재심사 및 변경 흐름도]



9) 「관세법」

제84조(품목분류체계의 수정)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 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다음 각 호에 따른 표 또는 품목분류의 품목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세율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을 신설 또는 삭제하거나 다시 분류할 수 있다.

1. 별표 관세율표
2. 제73조 및 제7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품목분류
3.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및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기획재정부장관이 품목을 세분하여 고시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품목분류표”라 한다)

10) 「관세법」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해당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 또는 품목분류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2.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3.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등”이라 한다)

원칙적으로 신청서를 접수한 관세평가분류원장은 30일 이내에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정해 ‘품목분류사전심사통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함. 그러나 일부 품목분류 사전심사의 경우 WCO(세계관세기구) 상정까지 이어지는 등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심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품목분류 미결현황]

구분	6개월이내	6개월~1년	1년~2년	2년 이상	합계
사전심사	338	32	39	5	414
재심사	56	10	9	2	77
기타질의	13	4	10	5	32
계	407	46	58	12	523

자료: 기획재정부

특정 물품을 수입할 때,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를 받기 전 수입신고 했으나, 심사 결과 신고 시보다 해당 물품이 고세율 품목으로 결정되는 경우, 수정신고 할 때 부족세액에 대한 가산세를 납부하게 됨. 그러나 납세자의 잘못이 아닌 심사의 장기 지연으로 인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납세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개정안은 이러한 사유에 대해서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하려는 것임.

둘째, 개정안과 그 성격이 유사한 과세가격 사전심사 결과 통보 후의 수정신고에 대해서는 현재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감면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특수관계자 간 거래되는 물품의 과세가격 사전심사 (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 이하 ‘ACVA’)¹¹⁾의 결과 통보 후 2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감면하고 있음. 이는 ACVA 결과통보 후 행해지는 납세자의 수정신고는 납세자의 과세당국에 대한 자발적인 협력의 의사표시임과 동시에, 자발적 세액오류 시정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¹²⁾이 인정되어 2021년 세법개정을 통해 법조문 상에 반영되었음.¹³⁾

참고로, 개정안은 가산세 회피를 위한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11) 현행 「관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정하되,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특수관계가 있어 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정하고 있음. 특수관계자 간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 사전에 ACVA를 신청할 수 있으며, 세관장은 ACVA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함 「관세법」

제37조(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① 제38조제1항에 따라 납세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과세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가격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2. 제30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과세가격 결정방법
3. 특수관계가 있는 자들 간에 거래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관세법 시행령」

제31조(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①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사전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거래당사자·통관예정세관·신청내용 등을 적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거래관계에 관한 기본계약서(투자계약서·대리점계약서·기술용역계약서·기술도입계약서 등)
2. 수입물품과 관련된 사업계획서
3. 수입물품공급계약서
4. 수입물품가격결정의 근거자료

4의2. 법 제37조제1항제3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5. 그 밖에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참고자료

②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서류가 과세가격의 심사에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법 제3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0일 이내
2.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30일 이내

1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기획재정부위원회 전문위원 2021년

13) 「관세법」

제42조의2(가산세의 감면)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2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1. ~2.
3. 제37조제1항제3호에 관한 사전심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그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통보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에 따라 해당 사전심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 전에 신고납부한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제42조제1항제1호의 금액

제37조(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① 제38조제1항에 따라 납세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과세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가격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2. 제30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과세가격 결정방법
3. 특수관계가 있는 자들 간에 거래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물품 및 그와 동일한 물품에 대해 심사
신청일부터 결과 통지일 전날까지 신고납부한 세액을 수정신고하
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하고 있음.

문 의 처
02)6788-5158

3. 서울불균형물품 제조·수리공장 지정기간 연장(김영진의원안, 정부안)

현 행	개정안
☐ 서울불균형물품의 면세(§89) ○ 서울불균형물품 제조·수리 공장의 지정 및 관세의 감면 - 서울불균형* 등을 시정하기 위해 지정된 중소기업 중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에 대해 관세 감면 * 동일한 산업내에서 제품의 가공단계별로 관세율이 역진현상을 보이는 물품 ① 항공기(부분품 포함) ② 반도체 제조용 장비(부속기기 포함) ○ 지정 불가 대상 - 특허보세운영인의 결격사유에 해당 -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등 ○ 지정기간 : <u>3년</u> - 지정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여 연장	☐ 관세감면 지정기간의 연장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지정기간: <u>10년</u> - (현행과 같음) ○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지정을 받은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지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적용

* 김영진의원안 2025. 8. 8. 발의(의안번호 12065), 정부안 2025. 9. 3. 제출(의안번호 12661)

☐ 개정안은 서울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관세 감면 제조·수리 공장 (이하 ‘제조·수리공장’)의 지정기간을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 하려는 것임.

☐ 현행 「관세법」은 서울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세

관장이 지정하는 공장에서 항공기(부분품 포함) 또는 반도체 제조용 장비(부속기기 포함)를 제조·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에 대하여는 관세를 면제하도록 하였음.¹⁴⁾ 이는 완제품의 관세율이 원재료의 관세율보다 낮은 역관세현상이 발생하는 세율불균형문제를 시정하고자 하는 입법취지가 있음.

[세율불균형 물품 개요]

세율불균형 물품

- 동일한 산업 내에서 제품의 가공단계별로 관세율이 역진(逆進) 현상을 보이는 물품 (완제품 관세율 ≤ 원재료 관세율)

역관세 현상

- 소재 부품 등 중간재의 관세율이 완제품의 관세율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현상
※ 역관세를 부과하면 생산 원가가 올라가고 국내 완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외국 경쟁 제품과 경쟁력 상실

현행법은 제조·수리 공장의 지정 효력의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은 보세공장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¹⁵⁾과 동시에, 그 지정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여 갱신 여부를 검사하고 있음.¹⁶⁾

개정안은 제조·수리 공장의 지정 기간을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14) 「관세법」

제89조(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 ① 세율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하는 공장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수출한 후 외국에서 수리·가공되어 수입되는 부분품과 원재료의 가공수리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항공기(부분품을 포함한다)
2. 반도체 제조용 장비(부속기기를 포함한다)

15) 「관세법」

제89조(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 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장에 대하여는 제179조, 제180조제2항, 제182조 및 제187조를 준용한다.

16) 「관세법」

제89조(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 ③ 제1항에 따른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지정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 첫째, 서울불균형물품 제조·수리공장 업체들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현재 제조·수리공장은 지정요건 미달로 인한 지정 취소 사례가 부재하고, 다수의 지정공장이 갱신을 반복하는 형태로 제도가 운영 중임.

[서울불균형물품 제조·수리 공장 지정 현황]

(단위: 개)

최초지정 산업구분	~2014년	2015~2019년	2020~2021년	2022~2024년	합계
항공기	33	22	15	19	89
반도체장비	-	1	1	1	3

자료: 기획재정부

특히 다수의 지정공장이 갱신을 반복하며 장기운영 중이며¹⁷⁾ 실무적으로도 제조·수리공장 지정 및 연장 절차와 별도로, 매년 현장조사를 통해 제조·수리공장 중 지정된 공장들의 운영실태를 관리·감독 중임. 이에 제조·수리공장의 지정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할 경우 관련 기업의 3년을 주기로 한 갱신 서류 구비 불편을 해소하고, 경영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음.

- 둘째, 서울불균형물품 관련 사업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제고되어 관련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제조·수리공장 지정으로 관세가 면제되는 산업은 항공기·반도체 제품의 제조 및 수리업으로, 초기투자비용이 큰 산업임과 동시에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군 중 하나임. 개정안과 같이 제조·수리공장의 지

17) 2011년 이후 지정취소 사례는 폐업, 법인분할·합병, 타 관할로의 이전 등 142건이며 10년 이상 제조·수리공장을 운영한 공장이 전체 제조·수리공장의 35.9%임.

정기간이 연장될 경우 관세 관련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현 상황에서 시설투자 및 장기계약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어 관련 국내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셋째, 세관당국의 관리하에 보다 엄격한 기준·절차가 적용되는 ‘보세공장’의 특허기간이 10년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 제89조에 따른 세율불균형물품에 제조·수리공장 지정 제도는 과거 세율불균형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를 보세공장제도로 운영하던 것을 ‘제조용원료품 감면세’ 제도로 전환하면서 도입된 제도임.¹⁸⁾

보세공장은 ‘외국물품’을 반입하여 이를 원료나 재료로 제조·가공하는 반면¹⁹⁾, 제조·수리 공장은 수입통관 절차를 거친 ‘내국물품’을 반입해 이를 원재료로 물품을 제조·수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세공장에 대한 세관당국의 관리·감독 수준이 더 엄격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세공장은 특허기간을 10년 이내로 하고 있으나²⁰⁾, 세율불균형물품의 제조·수리 공장의 지정 기간을 3년 이내로 하는 것은 세관당국의 관리수준에 비례하지 않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158

18) 「관세법」 김태인·정재완, 도서출판 청람

19) 「관세법」

제185조(보세공장) ① 보세공장에서는 외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거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하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작업을 할 수 있다.

20)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9조(특허기간) ① 보세공장 설치·운영의 특허기간은 10년의 범위 내에서 해당 보세공장의 설치·운영특허 신청기간으로 하되 갱신할 수 있다. 다만, 타인의 시설을 임차하여 설치·운영특허를 신청하는 경우의 특허기간은 임차계약기간으로 한다.

4. 관세 중복조사 금지 대상 명확화 및 사전통지기간 합리화 (정부안)

현 행	개정안
□ 관세조사권의 남용금지(§111) ○ (원칙) 적정, 공평과세의 실현 및 통관의 적법성 보장 -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관세조사 실시 - 다른 목적 등을 위한 조사권 남용 금지 ○ 중복조사 금지 대상 - <u>이미 조사 받은 해당 사안</u> (예외) 관세탈루 등의 혐의 명백, 이미 조사 받은 자의 거래상대방, 행정심판등의 재조사 결정 등, 세관공무원에게 금품 제공 등 □ 관세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114) ○ 사전통지 시점 - 조사시작 <u>15일</u> 전 조사 대상, 조사 사유 등 통지 - <u><신 설></u> ○ <u><신 설></u> ○ <u><신 설></u>	□ 관세중복조사 금지 대상 구체화 ○ (현행과 같음) ○ 중복조사 금지 대상 구체화 - <u>이미 조사받은 조사대상(§114에 따라 사전통지·미통지 사유 등 교부·변경 통지한 조사대상을 말함)</u> (현행과 같음) □ 사전통지 기간 연장 등 ○ 통지 시점 연장 - 조사시작 <u>20일</u> 전 조사 대상, 조사 사유 등 통지 - <u>불복 청구 등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의 경우에는 7일</u> * 과세전적부심사, 심사청구 등의 불복으로 인한 재조사 결정 ○ <u>사전 통지 없이 조사 개시하는 경우</u> - <u>사전통지 사항과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사유를 서면으로 교부</u> ○ <u>사전통지 또는 미통지 사유 등 교부한 사항을 변경하여 조사하는 경우</u> - <u>변경사항 및 변경사유를 서면으로 통</u>

현 행	개정안
	<u>진</u> ○ (적용례) 사전통지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관세조사를 사전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

* 정부안 2025. 9. 3. 제출(의안번호 12661)

□ 개정안은 관세조사 중복조사가 금지되는 대상을 이미 조사받은 조사대상(사전통지·미통지 사유 등 교부·변경 통지한 조사 대상)으로 한정하고, 관세조사의 사전통지 시점을 연장하는 등 관세조사와 관련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 「관세법」 제2조제20호에 따르면 ‘관세조사’란 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방문 또는 서면으로 납세자의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는 것을 말함.²¹⁾ 세관공무원은 관세조사권을 행사함에 있어 적정하고 공평한 관세를 실현하고 통관의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관세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해 관세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됨.²²⁾ 또한 관세조사권 남용금지의 일환으로 이미 조사받은 ‘해

21) 「관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 “관세조사”란 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방문 또는 서면으로 납세자의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제110조의2에 따라 통합하여 조사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22) 「관세법」

제111조(관세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관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고 통관의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관세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세관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받은 자를 다시 조사할 수 없다.

1. 관세탈루 등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이미 조사받은 자의 거래상대방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제118조제4항제2호 후단 또는 제128조제1항제3호 후단(제132조제4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재조사에 한정한다)
4. 납세자가 세관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당 사안'에 대해 기(既) 조사받은 자를 다시 조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관세조사 중복조사의 금지 대상인 이미 조사받은 '해당 사안'의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 이에 개정안은 이미 조사받은 '해당 사안'을 이미 조사받은 '조사대상'(제114조에 따른 사전통지 등을 한 조사대상²³⁾)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중복조사 금지 대상을 명확히 한정²⁴⁾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참고로, 국세의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중복조사 금지 대상을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과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²⁵⁾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3) 개정안에 따른 조사대상이란 다음을 의미함.

- ① 사전통지된 조사대상
- ② 증거 인멸 우려로 사전통지 하지 않은 경우 조사 개시일에 교부된 사전통지 사항
- ③ 조사대상 변경 시 변경된 조사대상

24) 관세조사 관련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별지 제4호서식 내 관세조사 통지서 및 별지 제20호서식에는 조사 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5)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7. 생략

[세무조사와 관세조사의 중복조사 금지 대상 관련 규정]

관세		국세
현행	개정안	
(제111조) 세관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사안에 대해 재조사 불가	(제111조) 세관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u>이미</u> <u>조사받은 조사 대상 (§114에</u> <u>따라 사전통지²⁶⁾· 미통지 사유</u> <u>등 교부²⁷⁾· 변경 통지²⁸⁾한</u> <u>조사대상</u>)을 제외하고는 재조사 불가	(제81조의4)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u>같은 세목 및 같은</u> <u>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u> 불가

- 둘째, 현행법은 관세조사 사전통지를 아니한 사유 등에 대한 교부 및 변경사항 등에 대한 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관세청 훈령으로 재량 운영 중이나, 개정안은 이를 법으로 명확히 의무화 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제고하려는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셋째, 현행법은 관세조사의 사전통지 기간과 관련하여 현행법은 조사를 받게 될 납세자에게 조사 시작 15일 전에 조사대상 등 관련 사항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① 이를 20일로 연장

2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2661)

제114조(관세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① 세관공무원은 제1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해당 장부, 서류, 전산처리장치 또는 그 밖의 물품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게 될 납세자(그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 시작 20일[제118조제4항제2호 후단 또는 제128조제1항제3호 후단(제131조제2호와 제132조제4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조사 결정으로 재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7일] 전에 조사 대상,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이하 이 조에서 “사전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범죄사건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2.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2661)

제114조(관세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③ 세관공무원은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개시하는 날에 조사받을 자에게 사전통지 사항과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2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2661)

제114조(관세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④ 세관공무원은 사전통지 또는 제3항에 따라 교부한 사항을 변경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 및 변경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하되, 불복 청구 등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의 경우에는 7일로 하고, ② 증거인멸 우려로 사전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사 개시일에 통지하며, ③ 조사대상 변경 시에는 변경사항 및 변경사유를 통지하도록 규정하여 관세조사 대상자의 납세자 권익을 제고하려는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참고로, 국세의 경우에도 「국세기본법」상 ① 조사 시작 20일 전 조사대상에 대한 사항을 통지하며 재조사의 경우에는 이를 7일로 하고,²⁹⁾ ②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사전통지하지 않은 경우 조사를 개시할 때 통지할 수 있도록 하며,³⁰⁾ ③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³¹⁾

29)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20일[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66조제6항과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제5항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으로 재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7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이하 이 조에서 “사전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0)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⑥ 세무공무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조사를 개시하거나 제4항제2호의 사유로 조사를 개시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세무조사통지서를 세무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 사전통지 사항,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 그 밖에 세무조사의 개시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제4항제2호의 사유로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 조사를 긴급히 개시하여야 하는 사유

31) 「국세기본법」

제81조의9(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①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세무조사와 관세조사의 사전통지 기간 및 사전통지를 아니한 사유 등
교부 등 관련 규정]

관세		국세
현행	개정안	
(제114조①) 조사 시작 15일 전 조사대상 등에 관한 사항을 통지	(제114조①) 조사 시작 <u>20일전</u> 조사대상 등에 관한 사항을 통지	(제81조의7) 조사 시작 <u>20일전</u> 조사대상 세목 등에 관한 사항을 통지
	(제114조①)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따른 재조사 등에 대해서는 <u>7일전</u> 조사대상 등에 관한 사항을 통지	(제81조의7) 심사청구에 따른 재조사 등에 대해서는 <u>7일전</u> 조사대상 세목 등에 관한 사항을 통지
(신설)	(제114조③)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조사개시일에 사전통지 사항과 사전통지를 아니한 사유 서면으로 교부	(제81조의7)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전통지 사항,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 등에 대해 통지
(신설)	(제114조④) 사전통지 또는 ③항에 따른 통지한 사항을 변경하여 조사하는 경우 변경사항 및 변경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	(제81조의9)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

한편, 개정안은 현행법상 사전통지의 예외사유인 범칙사건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³²⁾에는 별도로 사전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이는 범칙사건에 대한 관세조사의 경우 「관세법」 제12장 조사와 처분상의 수사절차를 따르기 때문임.

문 의 처

02)6788-5158

32) 「관세법」

제114조(관세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① 세관공무원은 제1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해당 장부, 서류, 전산처리장치 또는 그 밖의 물품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게 될 납세자(그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 시작 15일 전에 조사 대상,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범칙사건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2.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5. 보세공장 생산제품의 혼용비율·원료 과세 신청기한 조정(정부안)

현 행	개정안
☐ 보세공장 제조·가공 물품의 국내 반입 시 과세 방법 ○ (원칙) 제품과세(§188 본문) - 보세공장에서 생산한 물품을 물품의 성질·수량에 따라 과세* * 관세액= 제품가격 × 물품 세율 - 사전 신청·승인시: ○ 혼용비율 과세(§188 단서) - <u>내·외국 원재료 혼용 전</u> 신청·승인 시 외국원재료 혼용비율에 따라 과세* * 관세액= 제품가격 × 물품 세율 × 외국 원재료 혼용 비율 ○ 원료 과세(§189) - <u>외국 원재료 사용신고 전</u> 신청 시 외국 원재료의 성질·수량에 따라 과세* * 관세액= 외국원재료가격 × 물품 세율	☐ 혼용비율과세, 원료과세 신청기한 조정 ○ (현행과 같음) ○ 혼용비율 과세 신청기한 조정 - <u>수입신고 전</u> 신청·승인 시 외국원재료 혼용비율에 따라 과세* * 관세액= 제품가격 × 물품 세율 × 외국 원재료 혼용 비율 ○ 원료 과세 신청기한 조정 - <u>수입신고 전</u> 신청 시 외국 원재료의 성질·수량에 따라 과세* * 관세액= 외국원재료가격 × 물품 세

* 정부안 2025. 9. 3. 제출(의안번호 12661)

☐ 개정안은 보세공장 생산물품의 과세방법 선택 시기를 ‘수입신고 전’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현행법은 보세물품에 대해 원칙상 제품과세를 규정하되³³⁾ 내·외국물품(원재료)을 혼용하는 경우에는 ‘혼용 전’, 외국물품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재료 ‘사용신고 전’에 신청 및 승인을 받아 외국물품의 혼용비율 또는 외국원료를 기준으로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은 이러한 과세 방법

33) 현행법 제188조에 따르면, 보세공장 등에서 외국 원재료를 사용해 제조된 물품은 국내에서 만들어졌더라도 “외국물품”으로 간주하여 해당 제품(전체)의 세율과 가격으로 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선택 시기를 각각 ‘수입신고 전’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 현행법은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제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 3가지 과세 방식 중 기업에 가장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과세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³⁴⁾

[보세공장 생산 물품의 과세 방법 및 예시]

과세방법			
① 제품과세 (§188 본문) : 제조된 제품 전체의 세율 가격으로 과세 ② 혼용비율 제품과세 (§188 단서) : 제품 가격을 내·외국 원료 혼용 비율로 배분하여 과세 ③ 원료 과세 (§189) : 제품 제조에 사용된 외국 원료의 세율·가격으로 과세			
예시			
	① 제품과세	② 혼용비율 제품과세	③ 원료과세
관세액	$\text{제품가격 } 90\text{만원} \times 5\% = 4.5\text{만원}$	$4.5\text{만원} \times \frac{1}{3}(\text{외국원료 가격비율}) = 1.5\text{만원}$	$\text{외국원료 } 10\text{만원} \times 3\% = 0.3\text{만원}$
제품가격: 90만원 (세율 5%) 내국원료: 20만원 외국원료: 10만원 (세율 3%)			

이때 혼용비율 제품과세 또는 원료과세를 적용받기 위해 현행법은 내·외국 재료를 혼용하기 전 신청·승인을 받거나 동법 제186조³⁵⁾에

34) 「관세법」

제188조(제품과세) 외국물품이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그로써 생긴 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는 경우에는 그로써 생긴 제품 중 해당 외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에 상응하는 것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

제189조(원료과세) ①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제186조에 따른 사용신고 전에 미리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원료인 외국물품에 대한 과세의 적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제186조에 따른 사용신고를 할 때의 그 원료의 성질 및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②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세공장에 대하여는 1년의 범위에서 원료별, 제품별 또는 보세공장 전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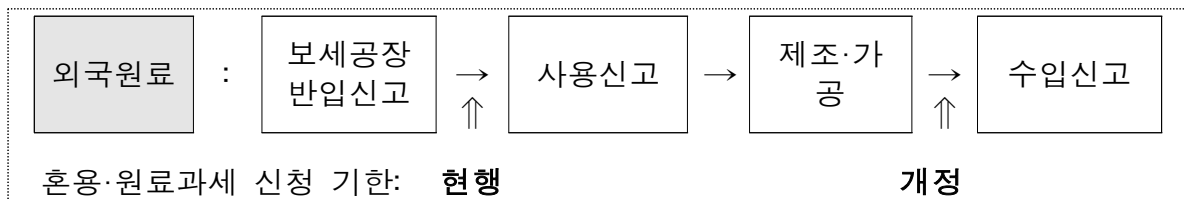
35) 「관세법」

제186조(사용신고 등) ① 운영인은 보세공장에 반입된 물품을 그 사용 전에 세관장에게 사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공무원은 그 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

따라 사용신고 하기 전에 미리 신청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은 이를 일괄적으로 수입신고 전으로 개정하여 기타 수입물품과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관세 통관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보세공장 생산 물품 관련 개정안의 과세 신청 개정 사항]



첫째, 일반적인 외국물품과의 과세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음. 현행 「관세법」은 모든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³⁶⁾ 그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³⁷⁾ 이에 보세공장 생산물품 또한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수입물품으로 간주되는 바, 그 과세 또한 수입신고 전에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할 것임. 이와 더불어 현행법은 보세공장 생산물품에 대해서는 과세방식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그 방식의 선택 또한 수입신고 전에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한 측면이 있음.

둘째, 관세행정의 현대화에 따라 현행법 상 혼용비율 제품과세·원료과세 물품에 대한 사후 확인·관리가 가능한 측면이 있음. 혼용비

36) 「관세법」

제14조(과세물건)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

37) 「관세법」

제15조(과세표준)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한다.

을 제품과세·원료과세 물품에 대한 사전신청·승인제도는 제도 도입 당시(1960년대) 과세 보류 상태인 외국 원재료에 대한 정확한 과세를 위해 도입한 제도였으나, 현재는 소요량계산서·전산기록(ERP)·재고조사 등으로 내·외국 원재료에 대한 사후 관리 감독이 용이한 상황임.

- 셋째, 보세공장 운영기업의 착오 등으로 사전 신청을 누락한 경우 대규모 세금이 추징될 수 있는 불합리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혼용비율 제품과세·원료과세를 사전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현행법에 따라 제조 제품 전체에 대해 관세가 부과됨.³⁸⁾ 그 결과 과세방법 선택 시기에 대한 보세공장 운영기업의 착오로 대규모 세금이 추징된 사례가 발생하였음. 이에 개정안과 같이 선택 시기를 ‘수입신고 전’으로 통일할 경우, 보세공장 운영기업의 행정부담을 경감하고 단순 신청 누락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158

38) 「관세법」 제188조의 단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4조 제1항은 보세공장에서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의 혼용에 관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 “혼용할 외국물품 및 내국물품의 기호·번호·품명·규격별 수량 및 손모을, 보세작업기간 및 사유”를 기재한 내·외국물품 혼용작업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법문언과 내·외국물품을 혼용하여 수입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혼용작업에 대한 적절한 감독절차를 거친 경우에 한하여 그 중 내국물품에 상당하는 것을 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위 규정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관세법」 제188조 단서의 경우 보세공장에서의 혼용작업 이전에 반드시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조심2016관0210, [내·외국물품 혼용승인 이전에 보세공장에서 사용한 내국물품을 외국물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6. 보세운송 시 운송수단 관련 의무 명확화(정부안)

현 행	개정안
☐ 보세운송통로(§216) ○ 운송통로의 제한 - 보세운송물품의 감시·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운송기간의 제한 -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운송의무 ○ 운송수단의 제한 - <u>운송수단을 정하여 신고 또는 승인받은 경우 신고·승인받은 운송수단 이용하여 운송 의무</u> - (과태료) 의무 위반 시 200만원 이하	☐ 보세운송 시 운송수단 관련 의무 명확화 ○ (현행과 같음) ○ 운송수단 관련 의무 명확화 - <u>보세운송을 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은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운송 의무</u> - (현행과 같음)

* 정부안 2025. 9. 3. 제출(의안번호 12661)

☐ 개정안은 보세운송 시 보세 운송수단 관련 의무의 내용을 명확화 하려는 것임.

☐ 현행법은 보세운송³⁹⁾과 관련하여 보세운송 기간 및 통로에 대한 제한과 더불어 운송수단과 관련된 의무 및 불이행 시의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⁴⁰⁾ 그러나 현행 규정은 보세운송

39) 보세운송이란 외국물품은 통관 후 운송하여야 하나 일정한 장소 간에는 통관업무의 신속과 편의를 위해 통관하지 아니하고 외국물품 그대로 운송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하며, 보세운송은 과세가 유보된 상태에서 운송되는 것이므로 세관의 통제를 받음.

40) 「관세법」

제216조(보세운송통로) ①세관장은 보세운송물품의 감시·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통로를 제한할 수 있다.

② 보세운송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끝내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보세운송을 하려는 자가 운송수단을 정하여 제213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운송을 마쳐야 한다.

제277조(과태료)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특허보세구역의 특허사항을 위반한 운영인

2. 제38조제4항, 제83조제1항, 제107조제3항, 제135조제2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고 시 운송수단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한 운송수단을 이용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오해될 여지가 있음.

[보세운송 운송수단 관련 현행 규정 및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216조제3항) 보세운송을 하려는 자가 운송수단을 정하여 제213조제2항41)에 따라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운송을 마쳐야 한다	제213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가 <u>보세운송을 할 때에는</u>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은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운송을 마쳐야 한다

□ 이에 개정안과 같이 보세운송을 하는 모든 경우에 대해서 신고하거나 승인받은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이를 활용하여 운송을 마쳐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보세운송 운송수단에 관한 의무 및 과태료 부과 규정을 도입한 취지를 온전히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⁴²⁾

제136조제3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40조제5항, 제141조제1호·제3호(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7조제1항, 제158조제2항·제6항, 제172조제3항, 제194조(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6조의2제5항, 제198조제3항, 제199조제1항, 제202조제1항, 제214조, 제215조(제219조제4항 및 제2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16조제2항·제3항(제219조제4항 및 제2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21조제1항, 제222조제3항, 제225조제1항 후단 또는 제251조제1항을 위반한 자

41) 「관세법」

제213조(보세운송의 신고) ① 외국물품은 다음 각 호의 장소 간에 한정하여 외국물품 그대로 운송할 수 있다. 다만, 제248조에 따라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해당 물품이 장치된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장소로 운송할 수 있다.

1. 국제항
2. 보세구역
3. 제156조에 따라 허가된 장소
4. 세관관서
5. 통관역
6. 통관장
7. 통관우체국

② 제1항에 따라 보세운송을 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의 감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2) “이에 신고 또는 승인받지 않은 운송수단이 수입물품의 운송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신고 또는 승인받지 않은 운송수단으로 수입물품을 운송할 경우 운송추적이 어려운 점을 악용하여 운송 중 물품을 바꿔치기하는 등 통관질서를 교란하는 행위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는 것임.”, 2023년 관세법 검토보고, 기획재정부위원회 전문위원실

문 의 처

02)6788-5158

7. 소액화물 상표권 보호 간이 절차 신설(정부안)

현 행	개정안
□ <신 설>	□ 상표권 보호 간이절차 (§235의2) ○ 상표권 보호 간이절차 적용 대상 - 수출입신고된 물품 등 (§235③) 중 ①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탁송품 또는 우편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가격 이하의 물품인 경우 ○ 상품권 보호 간이 절차 - 담보 제공, 통관보류·허용 및 유치·유치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 적용 가능 * (원칙)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의 통관 보류나 유치 요청 등 (§235③,④,⑤,⑥) ○ (시행일) 2026. 4. 1.부터 ○ (적용례) 2026년 4월 1일 이후 §235③에 따른 수출입신고등을 하거나 통관우체국에 도착하는 물품부터 적용

* 정부안 2025. 9. 3. 제출(의안번호 12661)

□ 개정안은 소액화물에 대해 상표권 보호 간이절차를 신설하려는 것임.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현행법 제235조제3항 각 호의 물품⁴³⁾ 중

43) 「관세법」

제235조(지식재산권 등의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
 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
 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
 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
 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7.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이하 “방위산업기술”이라 한다)
- ② 관세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물품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식재산권 등을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 또는 설정등록한 자 등으로 하여금 해당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게 할 수 있다.
- ③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식재산권 등을 신고한 자에게 해당 물품의 수출입, 환적, 복합환적, 보세구역 반입, 보세운송, 제141조제1호에 따른 일시양륙의 신고(이하 이 조에서 “수출입신고등”이라 한다) 또는 통관우체국 도착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자는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의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세관장은 탁송품 또는 우편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가격 이하의 물품이 ②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제공, 통관보류·허용 및 유치·유치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 현행법 제235조는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음을 규정하면서, 침해 물품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해당 지식재산권 등을 등록 또는 설정등록한 자로 하여금 해당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후, 세관장은 수출입신고된 물품 등이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식재산권 등을 신고한 자에게 해당 물품의 수출입 등에 관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함. 통보를 받은 자는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의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세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유치하여야 함.⁴⁴⁾ 한편, 세관장은 수출입신고된

-
1. 수출입신고된 물품
 2. 환적 또는 복합환적 신고된 물품
 3. 보세구역에 반입신고된 물품
 4. 보세운송신고된 물품
 5. 제141조제1호에 따라 일시양륙이 신고된 물품
 6. 통관우체국에 도착한 물품
-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식재산권 등을 보호받으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의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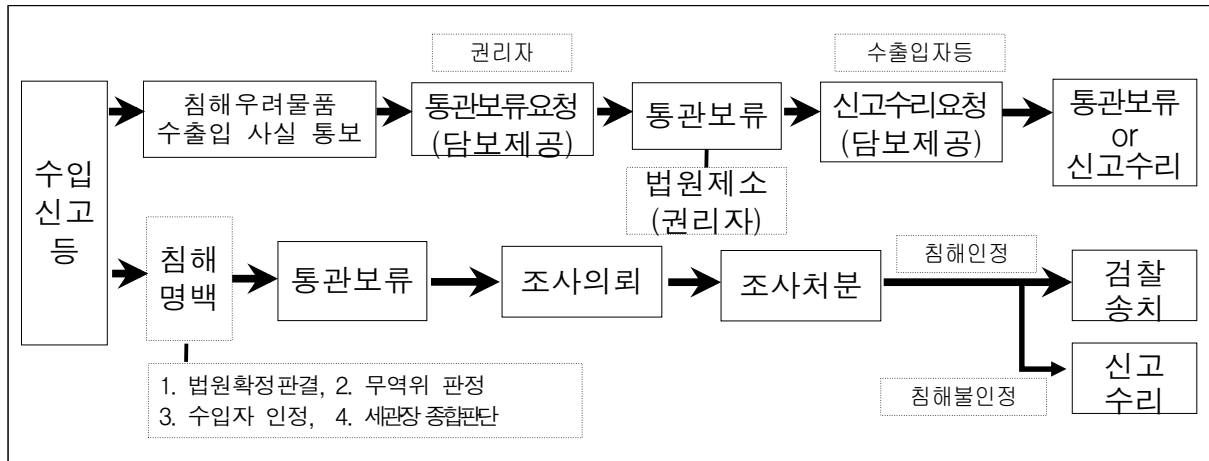
44) 「관세법」

제235조(지식재산권 등의 보호)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세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유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 또는 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화주가 담보를 제공하고 통관 또는 유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제외하고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허용하거나 유치를 해제할 수 있다.

1. 위조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붙여 제1항제1호에 따른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
2. 불법복제된 물품으로서 저작권등을 침해하는 물품
3. 같거나 유사한 품종명칭을 사용하여 제1항제3호에 따른 품종보호권을 침해하는 물품
4. 위조하거나 유사한 지리적표시를 사용하여 지리적표시권등을 침해하는 물품

물품 등이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해당 물품을 유치할 수 있음.⁴⁵⁾

[지식재산권 침해 우려 및 명백 물품의 통관 보류 업무 프로세스]



자료: 관세청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과거 전통적 대량수입을 전제로 설계된 지식재산권 보호 절차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소액·다건 위주의 해외 직구 물품에 대해 동일한 절차를 적용할 경우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행정적 부담이 과도한 측면이 있음.⁴⁶⁾ 특히 상표권 침해 물품으로 인한 통관보류 건수는 2023년 83,892건으로 2019년 44,422건 대비 2배 가량 증가하였음. 2023년 기준 수입경로별 통관보류 건수를

5. 특허로 설정등록된 발명을 사용하여 제1항제5호에 따른 특허권을 침해하는 물품
6. 같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사용하여 제1항제6호에 따른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물품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위산업기술이 사용된 물품
 - 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방위산업기술
 - 나. 가목에 해당하는 방위산업기술임을 알고 취득한 방위산업기술

45) 「관세법」

제235조(지식재산권 등의 보호) ⑦ 세관장은 제3항 각 호에 따른 물품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해당 물품을 유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 또는 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화주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46) 현행법에 따르는 통관 보류 절차는, 화주로 하여금 담보를 제공하고 통관보류 해제를 요청하며 해당 물품에 대한 결정심의회 등을 거쳐야 하므로 상표권 침해의 소액 물품에 적용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음.

보면 특송화물이 전체 통관보류 건수 중 89.7%, 우편물이 9.1%를 차지하고, 지식재산권 종류별 통관보류 건수는 상표권에 대한 통관보류 건수가 전체 통관보류 건수 중 98.4%를 차지함.

[지식재산권 종류별 통관보류 건수]

(단위: 건)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상표권	44,422 (99.6%)	78,983 (99.6%)	63,448 (99.4%)	105,172 (99.3%)	83,892 (98.4%)
저작권	52	108	87	37	45
기타	113	189	279	674	1,310
합계	44,587	79,280	63,814	105,883	85,247

자료: 기획재정부

[수입경로별 통관보류 건수]

(단위: 건)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일반화물	410	272	325	399	375
특송	15,741 (35.3%)	47,873 (60.3%)	41,671 (65.3%)	65,783 (62.1%)	76,435 (89.7%)
우편물	23,813 (53.4%)	30,810 (38.9%)	21,744 (34.1%)	39,536 (37.3%)	7,798 (9.1%)
여행자휴대품	4,623	325	74	165	639
합계	44,587	79,280	63,814	105,883	85,247

자료: 기획재정부

- ☐ 개정안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수출입신고된 물품 등 중 ① 탁송품 또는 우편물⁴⁷⁾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가격 이하의 물품 중⁴⁸⁾ ②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지식재

47) 현재 휴대품, 탁송품 또는 우편물 등은 관세법 상 간이통관 또는 특수통관의 대상이 되며 우편물 및 탁송물품의 통관절차에 대해서는 관세청의 고시를 별도로 운영하여 규정중임(「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48) 정부는 현행(「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목록통관 및 간이통관 대상이 되는 특송물품 또는 우편물의 가격 기준을 따를 예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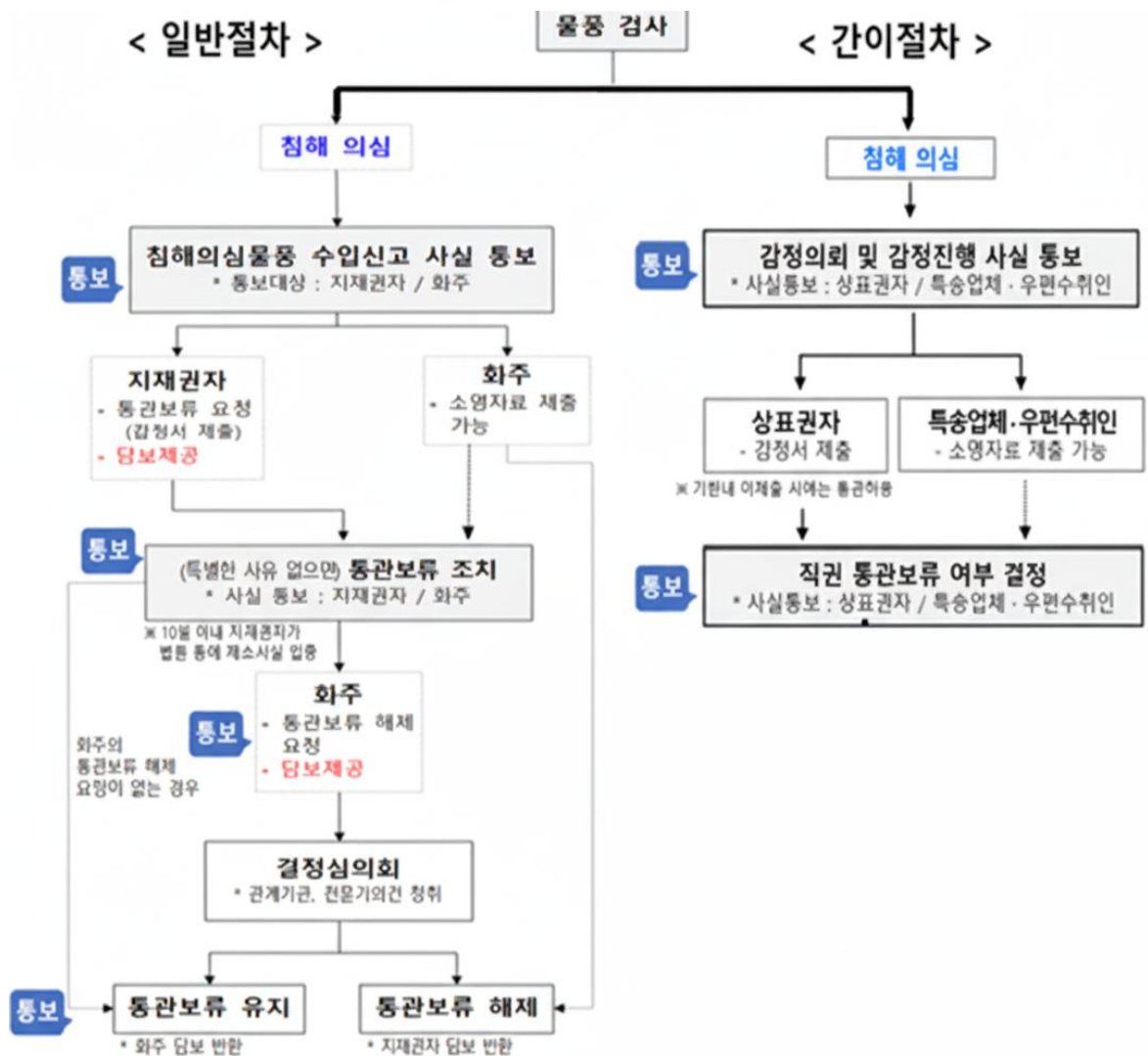
산권 보호에 대한 간이절차를 적용함으로써 해외직구 물품의 단속을 효율화하려는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따른 상표권 침해 의심물품에 대한 통관보류 간이 절차(안)-
관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현 행	개정안
□ <신 설>	□ 소액화물 상표권 보호 간이절차 (관세령 §243의2) ○ (침해의심통보) 상표권자, 수출입신고인 등에게 상표권 침해 의심 사실 통보 ○ (자료제출) - (상표권자) 통관보류 원하는 경우 상표권 침해 입증자료 제출 * 미제출시 통관 허용 가능 - (수출입신고인등) 상표권 미침해 입증자료 제출 가능 ○ (결정·통보) 통관보류·유치 여부 결정 즉시 상표권자, 수출입신고인 등에게 통보

-
- (간이통관 가격 기준)
- 물품가격 미화 2,000달러 이하 특송물품
 - 물품가격 미화 1,000달러 이하 우편물 및 선물 등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물품으로서 5백만원 이하 우편물

[개정안에 따른 상표권 침해 의심물품에 대한 통관보류 간이 절차(안)-도식화]



문 의 처

02)6788-5158

8. 탁송품 실제 배송지 제출 대상 및 주체 확대(정부안)

현행	개정안
□ 탁송품의 특별통관(§254의2) ○ 탁송품의 특별통관 - 탁송품 운송업자가 통관목록*을 제출함으로써 수입신고 생략 * 물품의 발송인 및 수신인의 성명, 주소, 국가 등 - 통관목록 작성 시 사실 일치 의무 ○ 탁송품의 실제 배송지 제출 의무* * 통관목록에 적힌 물품수신인의 주소지와 실제 배송지가 다른 경우 - (탁송품 운송업자) 배송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실제 배송한 주소지* 세관장 제출 의무 * 「우편법」에 따라 수취인이 배송지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등 제외 - <신설>	□ 탁송품 실제 배송지 제출 주체 확대 ○ (현행과 같음) ○ 탁송품 실제 배송지 제출 대상 및 주체 확대 - (현행과 같음) * <삭제> - (실제 배송한 자) 탁송품 운송업자가 실제 배송한 자*로 하여금 세관장에게 실제 배송한 주소지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허용 * 탁송품 운송업자와 실제 배송한 자가 다른 경우 ○ (적용례) 이 법 시행 이후 통관목록을 제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 이 법 시행 전 통관목록을 제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한 경우 탁송품의 실제 배송지 제출에 관해 종전의 규정에 따름

* 정부안 2025. 9. 3. 제출(의안번호 12661)

□ 개정안은 탁송품⁴⁹⁾⁵⁰⁾ 운송 시 실제 배송지의 제출 의무 대상을 확대하고, 탁송품 운송업자와 실제 배송한 자가 다를 경우에는 실제 배송한 자로 하여금 실제 배송지를 제출하게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현행 「관세법」에서는 탁송품의 수입 시 ① 통관목록 제출로 수입신고가 생략되는 ‘목록통관’(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⁵¹⁾ ② 간이수입신고(물품가격 미화 150~2,000달러)⁵²⁾ 또는 ③ 일반수입신고(물품가격 미화 2,000달러 초과)⁵³⁾ 후 검사를 거친 후 세관의

49) 「관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8. “탁송품”(託送品)이란 상업서류, 견본품, 자가사용물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국제무역선·국제무역기 또는 국경출입차량을 이용한 물품의 송달을 업으로 하는 자(물품을 휴대하여 반출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는 제외한다)에게 위탁하여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외국으로 반출하는 물품을 말한다.

50) 특송물품은 탁송화물 또는 탁송품이라고도 한다. 관세법, 김태인·정재완, 도서출판 청람

51) 「관세법」

제254조의2(탁송품의 특별통관) ① 제241조제2항제1호의 탁송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운송업자(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탁송품 운송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적힌 목록(이하 “통관목록”이라 한다)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1. 물품의 송하인 및 수하인의 성명, 주소, 국가
2. 물품의 품명, 수량, 중량 및 가격
3. 탁송품의 통관목록에 관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52) 「관세법」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다.

1. 휴대품·탁송품 또는 별송품

53) 「관세법」

제222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 및 보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보세운송업자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보세운송업자
2. 보세화물을 취급하려는 자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화물운송의 주선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화물운송주선업자”라 한다)
3. 국제무역선·국제무역기 또는 국경출입차량에 물품을 하역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4. 국제무역선·국제무역기 또는 국경출입차량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 가. 선박용품
 - 나. 항공기용품
 - 다. 차량용품
 - 라. 선박·항공기 또는 철도차량 안에서 판매할 물품
 - 마. 용역
5. 국제항 안에 있는 보세구역에서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지정장치장 또는 탁송품 운송업자의 보세창고 또는 시설에서 통관하게 됨.⁵⁴⁾

탁송품에 대하여는 X-ray 검사(전수), 개장(開張) 검사(무작위)를 통해 수입금지품이나 과세물품의 불법통관을 방지하고 있음.

6. 국제무역선·국제무역기 또는 국경출입차량을 이용하여 상업서류나 그 밖의 견본품 등을 송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제254조의2(탁송품의 특별통관) ⑥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별도로 정한 지정장치장에서 탁송품을 통관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탁송품에 대한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탁송품을 해당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영하는 보세창고 또는 시설(「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입주한 업체가 해당 자유무역지역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한정한다)에서 통관할 수 있다.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송업체”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세관장에게 등록한 업체를 말한다.
2. “특송물품”이란 특송업체가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물품 중 법 제254조의2제6항에 따라 통관하는 물품을 말한다.
3. “통관목록”이란 법 제254조의2제1항에 따라 특송업체가 특송물품의 품명·가격 등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한 목록을 말한다.
4. “목록통관 특송물품 사후심사”란 통관절차가 완료된 목록통관 특송물품에 대하여 통관이 적법한지를 사후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8조(신고구분) ① 특송물품에 대한 통관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용건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에 해당하는 물품은 미화 200달러) 이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목록통관특송물품”이라 한다)은 특송업체가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법 제241조제1항의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2.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에 해당하는 물품은 미화 200달러)를 초과하고 2,000달러 이하인 물품(이하 “간이신고특송물품”이라 한다)은 간이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3. 물품가격이 미화 2,0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이하 “일반수입신고특송물품”이라 한다)은 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목록통관배제대상물품과 별표 2의 간이신고배제대상물품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목록통관 또는 간이신고를 배제하고 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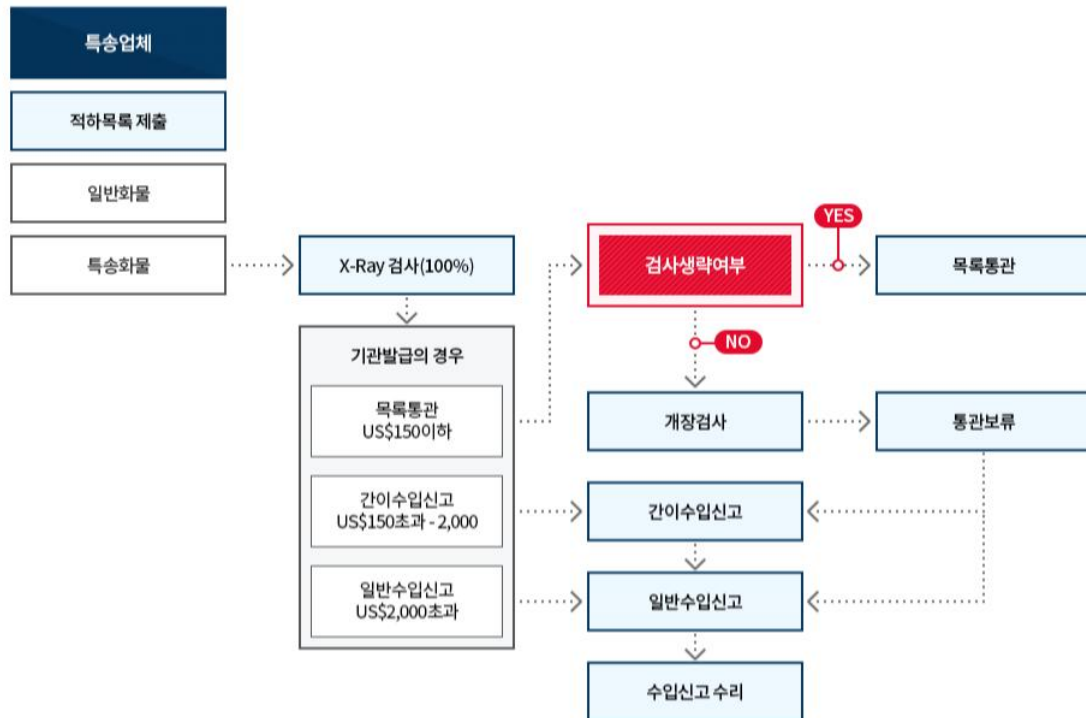
54) 「관세법」

제254조의2(탁송품의 특별통관) 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탁송품에 대하여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하여야 하며, 탁송품의 통관목록의 제출시한, 실제 배송지의 제출, 물품의 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별도로 정한 지정장치장에서 탁송품을 통관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탁송품에 대한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탁송품을 해당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영하는 보세창고 또는 시설(「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입주한 업체가 해당 자유무역지역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한정한다)에서 통관할 수 있다.

⑦ 제6항 단서에 따라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영하는 보세창고 또는 시설에서 통관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탁송품 검사설비 기준, 설비이용 절차, 설비이용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탁송품(특송물품) 수입 개관]



자료: 관세청

탁송품의 배송과 관련하여 현행법은 탁송품 운송업자가 통관목록55)에 적힌 물품수신인의 주소지가 아닌 곳(「우편법」 제31조 단서56)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에 탁송품을 배송하거나 배송하게 한

55) 「관세법」

제254조의2(탁송품의 특별통관) ① 제241조제2항제1호의 탁송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운송업자(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탁송품 운송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적힌 목록(이하 "통관목록"이라 한다)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1. 물품의 송하인 및 수하인의 성명, 주소, 국가
2. 물품의 품명, 수량, 중량 및 가격
3. 탁송품의 통관목록에 관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56) 「우편법」

제31조(우편물의 배달) 우편물은 그 표면에 기재된 곳에 배달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우편법 시행령」

제43조(우편물 배달의 특례) 법 제31조 단서에 따라 우편물을 해당 우편물의 표면에 기재된 곳 외의 곳에 배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일건축물 또는 동일구내의 수취인에게 배달할 우편물로서 그 건축물 또는 구내의 관리사무소, 접수처 또는 관리인에게 배달하는 경우
2. 사서함을 사용하고 있는 수취인에게 배달할 우편물로서 사서함 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한 것을 그 사서함에 배달하는 경우
3. 우편물을 배달하지 아니하는 날에 수취인의 청구에 의하여 배달우편관서 창구에서 우편물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실제 배송한 주소지를 세관장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① 물품수신인의 주소지가 아닌 곳으로 배송의 예외가 되는 「우편법」 제31조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② 탁송품 운송업자와 실제 배송한 자가 다를 경우 탁송품 운송업자가 실제 배송한 자로 하여금 세관장에게 실제 배송지에 관한 정보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입법취지가 있을 것으로 보임.

- ①(실제 배송지 제출 예외 조항(「우편법」 제31조 단서)의 삭제) 개정안은 탁송품 운송업자의 실제 배송지 제출 예외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탁송물품에 대한 위험관리를 강화하려는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현재 「우편법」 제31조 단서의 예외를 악용하여 실제 배송지를 고의로 은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경우

- 3의2. 수취인의 일시부재나 그 밖의 사유로 우편물을 배달하지 못하여 배달우편관서 창구 또는 무인우편물 보관함에서 우편물을 교부하는 경우
4. 교통이 불편한 도서지역이나 농어촌지역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 배달할 우편물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별 또는 공동수취함을 설치하고 그 수취함에 배달하는 경우
5. 수취인이 동일 집배구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수령인으로 지정하여 배달우편관서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대리수령인에게 등기우편물을 배달하는 경우
6. 우편물에 “우체국보관” 표시가 있는 것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배달우편관서 창구에서 수취인에게 교부하는 경우
7. 교통이 불편하여 통상의 방법으로 우편물 배달이 어려운 지역에 배달할 우편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배달우편관서 창구에서 수취인에게 교부하는 경우
8. 무인우편물보관함을 이용하는 수취인의 신청 또는 동의를 받아 그 수취인과 동일 집배구에 있는 무인우편물보관함에 등기우편물을 배달하는 경우
9. 법 제31조의2에 따라 수취인이 주거이전을 신고한 경우로서 우편물을 수취인이 신고한 곳으로 전송하는 경우
10. 수취인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우편물에 대하여 우편물의 표면에 기재된 곳 외의 곳으로 배달을 청구하는 경우

[실제 배송지 제출 의무 예외 조항을 악용한 사례 및 예시]

<실제사례>

- 특송화물로 마약류를 반입하여 수취 주소와 신고 주소가 상이한 경우
- 목록통관 및 수입신고 시 신고 주소는 각기 다르나 실제 배송주소는 모두 동일하여 상용물품의 분산 반입이 의심되는 경우

< 악용 가능 예시>

- 사서함, 무인우편물 보관함 등에 유해물품 등을 배송받는 경우
- 관리사무소의 관리인에게 배달 하도록 하여 유해물품 등을 배송 받는 경우

개정안과 같이 탁송품의 실제 배송지 제출의 예외 조항을 삭제할 경우, 국내 배송되는 탁송품 중 통관목록 상의 물품수신인 주소지와 실제 배송지가 불일치하는 경우의 관련 정보가 모두 제출됨으로써, 특송물품을 통해 유입되는 마약류 등의 유해물품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특히 해외직구 물품의 실제 배송지는 상용물품의 분산 반입, 마약밀반입 차단·적발 등 위험 관리에 필요한 중요 정보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② (탁송품 실제 배송한 자의 실제 배송지 제출 허용 규정) 개정안은 탁송품 운송업자와 실제 배송한 자가 다를 경우 실제 배송한 자인 국내 택배업체 등이 세관에 실제 배송지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위험관리를 강화하고 특송업체 및 국내 택배업체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현행법은 탁송품 운송업자가 실제 배송지가 아닌 곳에 탁송품을 배송하게 한 경우에 대해서 실제 배송한 주소지를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탁송품 통관 이후 탁송업체

가 최종 배송을 국내 택배업체에 위탁하는 사례가 많아, 택배업체가 실제 배송지를 세관에 직접 제출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임. 특히 현재는 특송업체가 주소지 의심 건별로 국내 택배업체에 관련 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고 있어 누락 가능성이 높고, 국내 택배업체의 입장에서조차 개별 건별로 정보를 제공하여 행정 부담⁵⁷⁾이 가중되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이에 개정안은 실제 배송한 자가 세관장에게 실제 배송지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국내 택배업체 등이 세관장에 해당 정보를 직접 제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특송물품을 통한 마약 등의 유해물품 반입에 대한 위험관리를 강화하고, 동시에 특송업체와 국내 택배업체의 행정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개정안에 따라 일괄적으로⁵⁸⁾ 공유될 실제 배송지 정보는 개인정보(이름, 주소 등)⁵⁹⁾에 해당되어 관련 정보 공유 시 국내 택배업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우려 가능성이 있는 상황임. 이에 「개인정보보호법」의 위반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⁶⁰⁾ 개정안과 같

57) 특송업체가 제출 요청한 주소지 의심건을 수작업으로 선별 및 제출함에 따라 실제 배송한자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기획재정부 자료

58) 개정안에 따라 특송품 운송업자의 실제 배송지 제출 예외 조항인 「우편법」 제31조 단서 조항이 삭제되면, 정부는 행정부담 경감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해 택배업체의 배송지 데이터베이스를 공유받는 방식으로 실제 배송지 제출 제도를 운영할 예정임.

59) 정부는 업무상의 편의를 위해 택배업체의 배송지 데이터베이스를 공유받는 방식으로 집행할 예정임.

60)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이 실제 배송지의 공유를 위한 법률상의 근거⁶¹⁾를 마련함으로써,
해외직구 물품의 위험관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158

61) 다만, 탁송품 운송업자와 실제 배송한 자가 다른 경우 탁송품 운송업자는 실제 배송한 자로 하역금 세관
장에게 실제 배송한 주소지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9. 불법·불량·유해물품 관련 정보제공 요청 범위 확대(차규근의원안, 정부안)

현 행	개정안
☐ 불법·불량·유해물품에 대한 정보 등의 제공 요청과 협조(§264의10) ○ 정보제공 요청 가능 주체 - 중앙행정기관의 장 ○ 불법·불량·유해물품 관련 정보제공 요청 범위 -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구비조건·성분·표시·품질 등을 위반한 물품 정보 - 위반 물품을 제조·거래·보관·유통하는 자에 관한 정보 - <신 설> ○ 정보 요청 시 중앙행정기관장의 협조 의무	☐ 정보제공 요청 범위 확대 등 ○ 정보제공 요청 주체 확대 - 중앙행정기관의 장 (<u>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위탁 받은 자 포함</u>)(정부안) ○ 정보제공요청 범위 확대 - <u>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출입 허가 등의 신청을 불허하거나 반려한 물품 정보 (차규근의원안)</u> - <u>법정 조건 등에 부합하지 않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출입 허가 등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반려한 물품 정보 (정부안)</u> ○ (현행과 같음)

* 차규근의원안 2025. 5. 22. 발의(의안번호 10584), 정부안 2025. 9. 3. 제출(의안번호 12661)

☐ 개정안은 관세청장이 중앙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불법·불량·유해물품에 대한 정보 등의 제공 요청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차규근의원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출입 허가 등의 신청을 불허하거나 반려한 물품에 대해 해당 정보의 제공을 관세청장이 요

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정부안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구비조건 등에 부합하지 않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출입 허가 등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반려한 물품에 대한 해당 정보의 제공을 관세청장이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정보제공 요청 가능 대상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더불어 그 권한 및 업무를 위임·위탁 받은 자를 포함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 현행법은 불법·불량·유해물품에 대한 정보 등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⁶²⁾ 동 규정은 ① 중앙행정기관이 보유한 불법·불량·유해물품의 국내유통정보를 관세청이 제공받아 수출입 통관단계의 위험관리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 ② 개정 당시 관세청 고시에 규정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할 경우 관계기관 간 협조가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2020년 세법 개정을 통해 신설되었음.

이를 바탕으로 현재 각 중앙행정부처는 국민안전, 국내산업의 육성⁶³⁾ 및 국제 수출 통제체제⁶⁴⁾ 등 국제협약 이행을 위한 수출입 승인 및 허가 내역을 관세청에 제공하여 미허가 물품등의 국내로

62) 「관세법」

제264조의10(불법·불량·유해물품에 대한 정보 등의 제공 요청과 협조) ① 관세청장은 우리나라로 반입되거나 우리나라에서 반출되는 물품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이 보유한 다음 각 호의 불법·불량·유해물품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구비조건·성분·표시·품질 등을 위반한 물품에 관한 정보
2. 제1호의 물품을 제조, 거래, 보관 또는 유통하는 자에 관한 정보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63) 국내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 : 폐섬유, 석탄재, 폐타이어 등 수입금지

64)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전략물자 수출 제한

의 반출입을 제한하고 있음. 또한 구비조건·성분 등 법령에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위반물품에 대한 정보 등도 관세청에 제공하여 동일 물품의 추가적인 반출입을 통제하고 있음.

그러나 「관세법」에 따르는 수출입 물품의 안전 관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한 정보를 바탕으로 기존 ‘위반’ 물품과 동일한 물품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음. 이로 인해 제3국을 우회하여 수출입 되거나 수출입 규제 대상이 아닌 HS번호로 수출입 신고되는 물품 등 우회하여 수출입 하는 물품들이 법적 안전망을 회피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⁶⁵⁾

- 이에 개정안과 같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출입 허가 등의 신청을 거부(불허) 또는 반려한 물품에 대한 정보까지 추가적으로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할 경우, 관세청은 각 중앙행정기관이 보유한 수출입물품 안전관리 관련 위험정보를 선제적으로 보유하고 불법·불량·유해물품에 대한 반출입을 최소화하여, 국민안전과 기업권익의 보호 수준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특히, 기존의 ‘위반’ 물품 관련 정보뿐 아니라, 각 부처가 자체 위험성을 평가하여 수출입을 반려·불허한 정보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그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자에게 요청하여 이를 수출입 통관에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적극적인 위험관리⁶⁶⁾가 가능해

65) 제3국을 우회하여 수출입하거나, 수출입 규제대상이 아닌 품목번호로 수출입 신고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으나 해당 물품은 기존의 ‘위반’ 물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전적으로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사전 선별검사가 곤란한 상황임.

66) 정부는 관계부처로부터 위반 물품 및 반려·불허 물품에 대한 관련 정보를 사전에 제공 받고, 관세청 국경위험관리센터는 우범성 물품을 사전에 지정하여, 일선 세관으로 하여금 수출입 신고시 우범성 물품에

질것으로 보임. 최근 관세청은 중앙행정기관 등으로부터 불허 반려 정보를 공유 받아 관세법상 범칙 혐의 등을 조사한 바 있음.⁶⁷⁾

[중앙행정기관과 불허·반려 정보 공유를 통한 관세청 위험관리 사례]

- ① ‘수입금지 폐기물’ 불법반입 위험 분석
(환경부로부터 수출입폐기물품의 불허·반려·취소 현황 공유)
-> 반려 등으로 수입이 제한된 품목을 허가가 필요 없는 품목으로 허위신고하는 등 우회수입 여부를 조사하여 일선 세관에서 관련자에 대해 조사 지시
- ② ‘상황허가 반려물품’ 불법 수출위험 분석
(무역안보관리원으로부터 상황허가 반려 내역 공유)
-> 품목코드(HS코드) 허위 신고를 통한 수출규제 회피 여부를 조사 중

자료: 관세청

□ 다만, 차규근의원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출입 허가 등의 신청을 불허 또는 반려한 물품’에 관한 정보를 관세청장이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차규근의원안에 따른 경우 법령에 따른 사유가 아닌 각 행정청의 재량으로 수출입 허가 등의 신청을 불허 또는 반려한 물품에 대한 정보 또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세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함.

이는 현행 조문의 도입 취지를 고려하였을 때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정보 제공 목적이 명확하도록 정부안과 같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구비조건 등’에 부합하지 않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출입 허가 등의 신청을 불허하거나 반려한 물품으로 그 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대한 검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임.

67) 관세청은 유관기관과 정보 요청범위와 확대와 관련하여 협의가 완료되었다는 입장임

[산업부] 상황허가 신청 불허/반려 정보, 전략물자 수출허가 신청 불허/반려 정보

[환경부] 폐기물 수출입 불허/반려 정보, 멸종위기 동식물 국제거래 불허/반려 정보

문 의 처
02)6788-5158

1. 마약류·유해물품 등 은닉 의심자에 대한 신체 검색 근거 명확화 (김영진의원안, 정부안)

현 행	김영진의원안	정부안
□ 세관공무원의 물품 또는 운송수단등에 대한 검사(§265) ○ 명령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물품* 등의 검사·봉쇄 가능 * 물품, 운송수단, 장치 장소 및 관계 장부 및 서류 ○ <신 설>	□ 마약류·유해물품 등 은닉 의심자에 대한 신체 검색 근거 신설 ○ (현행과 같음) ○ <u>세관 공무원의 마약류 등 은닉 의심자에 대한 신체 검색 근거 신설</u> - 검색 대상 : 여행자 승무원 그밖에 입국하는 자의 휴대품 - 검색 업무 범위: ① 수출입금지 물품에 대한 검사업무 등(§137의2①) ② 불법·불량 유해 물품 등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으로서 유치사유에 해당하는 물품을 휴대하는 자에 대한 검사업무(§206①(2)라) - 검색 사유: 마약류, 무기류 및 사회안전 또는 국민 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의 휴대 및 은닉 - 검색 방식 : 해당 물품	□ 마약류·유해물품 등 은닉 의심자에 대한 신체 검색 근거 신설 ○ (현행과 같음) ○ <u>세관 공무원의 마약류 등 은닉 의심자에 대한 신체 검색 근거 신설</u> - 검색장비 사용 검색 대상 : 여행자, 승무원, 그밖에 입국하는 자(이하 “여행자등”)의 휴대품 - 검색장비 사용 검사 업무 범위: ① 수출입금지 물품에 대한 검사업무 등(§137의2①) ② 불법·불량 유해 물품 등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으로서 유치사유에 해당하는 물품을 휴대하는 자에 대한 검사업무(§206①(2)라)

현 행	김영진의원안	정부안
	의 제시 및 불응 시 신체 검색 가능	○ 신체검색 사유 - 검색장비 사용 검색 결과 여행자등이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휴대하거나 숨기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① 마약류 ②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총포 등 ③ 그 밖에 불법·불량·유해물품 등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 물품의 제시 요구 - 불응 시 신체검색 가능 ○ 여성에 대해서는 성년의 여성이 검사

* 김영진의원안 2025. 8. 21. 발의(의안번호 12276), 정부안 2025. 9. 3. 제출(의안번호 12661)

□ 개정안은 마약류 등 유해물품에 대한 검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여행자 등의 휴대품 및 휴대품 소지 여부를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색장비를 사용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검색 결과 여행자 등이 마약류 등을 휴대하거나 숨기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내보이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체 검색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정부안은 수출입금지 물품 등의 검사 업무를 위해 여행자, 승무원

및 그밖에 입국하는자(이하 “여행자등”)를 검색장비를 사용하여 검색하고, 검색 결과에 따라 여행자등이 마약류 등의 물품을 휴대하거나 숨기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해당 물품을 내보이도록 요구하며, 불응 시 신체 검색을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여성에 대한 신체 검색 시 성년의 여성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김영진의원안은 동일한 내용이되, 신체 검색의 방법·절차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현행법은 세관공무원이 현행법 또는 현행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물품 등을 검사 또는 봉쇄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⁶⁸⁾ 그러나 휴대품을 통한 마약류 등의 유해물품의 국내 반입이 증가하고, 해당 물품을 은닉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에 대한 신체검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률에는 신체검색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는 부재한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① 휴대품 및 휴대품 소지 여부를 검색장비를 사용하여 검색할 수 있는 업무를 규정하고 ② 검색 결과에 따라 신체 검색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며 ③ 여성에 대하여는 신체검색을 할 때에는 성년의 여성이 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이를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음.

68) 「관세법」

제265조(물품 또는 운송수단 등에 대한 검사 등) 세관공무원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물품, 운송수단, 장치 장소 및 관계 장부·서류를 검사 또는 봉쇄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① (휴대품 및 휴대품 소지 여부를 검색장비를 사용하여 검색할 수 있는 업무의 규정) 개정안은 수출입금지 물품에 대한 검사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검색장비를 사용하여 여행자들의 휴대품 및 휴대품 소지 여부를 검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개정안은 검색장비를 사용하여 여행자들의 휴대품 및 휴대품 소지여부를 검색할 수 있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⁶⁹⁾ 검색장비를 활용한 검사에 대한 법률상의 근거를 명확화하려는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 ② (검색 결과에 따른 신체 검색 규정 신설) 개정안은 제2항에

69) 「관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의안번호 12661호)

제265조(물품 또는 운송수단에 대한 검사 등) ② 세관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여행자, 승무원 및 그 밖에 입국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여행자등”이라 한다)의 휴대품 및 휴대품 소지 여부를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색장비를 사용하여 검색할 수 있다.

1. 제137조의2제1항 각 호의 검사업무
2. 제206조제1항제2호라목의 유치사유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검사업무

「관세법」

제137조의2(승객예약자료의 요청)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5조에 따라 입항하거나 제136조에 따라 출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가 소속된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가 운영하는 예약정보시스템의 승객예약자료(이하 이 조에서 “승객예약자료”라 한다)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열람하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한 내에 제출하여 줄 것을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제234조에 따른 수출입금지물품을 수출입한 자 또는 수출입하려는 자에 대한 검사업무
2. 제241조제1항·제2항을 위반한 자 또는 제241조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물품을 수출입하거나 반송하려는 자에 대한 검사업무
 - 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이하 “마약류”라 한다)
 - 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및 석궁

제206조(유치 및 예치) ① 세관장은 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유치할 수 있다.

1. 유치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 가. 여행자의 휴대품
 - 나.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종사하는 승무원의 휴대품
2. 유치사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제226조에 따라 필요한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 나. 제96조제1항제1호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관세의 면제 기준을 초과하여 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다. 제235조에 따른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등 이 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 라. 불법·불량·유해물품 등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마. 「국세징수법」 제30조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에 따라 세관장에게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가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따라 검색장비를 활용하여 여행자들을 검색한 결과, 여행자들이 마약류 등의 물품을 휴대하거나 숨기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내보이도록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신체 검색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유해물품 반입을 방지하기 위한 신체 검색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입법취지가 있음.

□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개정안은 여행자들이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휴대하거나 숨기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물품을 내보이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신체 검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심되는 경우’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여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상황임. 특히 동조항은 신체 검색을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고, 신체 검색은 개인의 신체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조치이므로, 형사절차의 강제수사와 동일한 수준의 관련 규정의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형사소송법」 등의 유사입법⁷⁰⁾과 같이 문구를 수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둘째, 마약류 외 원료 물질, 임시마약류를 휴대하거나 숨기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도 그 물품을 내보이도록 요구하고, 이에 따르

70)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지 아니하는 경우 신체 검색을 할 수 있도록 포괄하여 규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2024년 세법 개정을 통해 마약류 등의 수출입 제한 규정을 신설하면서, 마약류 외 원료물질, 임시마약류 까지 수출입 제한 품목으로서 규정하였음.⁷¹⁾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는 신체 검색은 마약류를 휴대하거나 숨기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만 가능할 뿐, 마약류 외 원료물질 및 임시마약류를 휴대하거나 숨기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신체 검색이 불가능한 상황임.

□ ③ (여성에 대한 성년 여성의 검사 의무) 개정안은 제3항에 따른 신체 검색 시 여성에 대해서는 성년 여성이 검사하도록 규정하여 여성 인권등의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려는 입법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동법 제301조의 신변 수색⁷²⁾ 및 「형사소송법」 제141조제3항 등에 따른 입법례와 부합함.

이에 상기된 내용 등을 고려하여 개정안의 문구를 다음과 같이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71) 「관세법」

제234조의2(마약류 등의 수출입 제한) 마약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료물질 및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임시마약류는 같은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72) 「관세법」

제301조(신변 수색 등) ① 세관공무원은 범죄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한 물품을 피의자가 신변(身邊)에 은닉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내보이도록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변을 수색할 수 있다.

② 여성의 신변을 수색할 때에는 성년의 여성을 참여시켜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141조(신체검사에 관한 주의) ① 신체의 검사에 관하여는 검사를 받는 사람의 성별, 나이, 건강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사람의 건강과 명예를 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피고인 아닌 사람의 신체검사는 증거가 될 만한 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③ 여자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의사나 성년 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수정의견]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제265조(물품 또는 운송 수단 등에 대한 검사 등) (생략)	제265조(물품 또는 운송 수단 등에 대한 검사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u>세관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여행자, 승무원 및 그 밖에 입국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여행자등”이라 한다)의 휴대품 및 휴대품 소지 여부를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색장비를 사용하여 검색할 수 있다.</u> <u>1.제137조의2제1항 각 호의 검사업무</u> <u>2.제206조제1항제2호라 목의 유치사유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검사업무</u> ③ <u>세관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검색한 결과 여행자등이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휴대하거나 숨기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내보이도록 요구하</u>	제265조(물품 또는 운송 수단 등에 대한 검사 등) ① (개정안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③ ----- ----- ----- ----- ----- <u>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u> -----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u>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체 검색을 할 수 있다.</u> <u>1. 마약류</u> <u>2.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및 석궁</u> <u>3. 그 밖에 불법·불량·유해물품 등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u> <u>④ 여성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신체 검색을 할 때에는 성년의 여성이 하여야 한다.</u>	----- ----- -----. <u>1. 마약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료물질 및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임시마약류</u> 2.:3. (개정안과 같음) ④ (개정안과 같음)

□ 한편, 김영진의원안은 신체 검색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신체검색은 개인의 신체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조치이므로 관련 내용은

법률상에 직접 규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또한, 현행 관세법 내 마약류 관련 규정 중 동법 제234조의2에 따르는 마약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료물질 및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임시마약류를 포괄하지 않는 규정은 원료물질 및 임시마약류를 포함하도록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⁷³⁾

문 의 처

02)6788-5158

73) 개정안에 따른 검색장비를 사용하여 검색할 수 있는 검사업무 또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물품을 수출입하거나 반송하려는 자에 대한 검사업무만을 포함할 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외 원료물질 및 임시마약류 물품을 수출입하거나 및 반송하려는 자에 대한 검사업무를 포함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관세법」

제137조의2(승객예약자료의 요청)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5조에 따라 입항하거나 제136조에 따라 출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가 소속된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가 운영하는 예약정보시스템의 승객예약자료(이하 이 조에서 “승객예약자료”라 한다)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열람하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한 내에 제출하여 줄 것을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제234조에 따른 수출입금지물품을 수출입한 자 또는 수출입하려는 자에 대한 검사업무
2. 제241조제1항·제2항을 위반한 자 또는 제241조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물품을 수출입하거나 반송하려는 자에 대한 검사업무

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이하 “마약류”라 한다)

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및 석궁